##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6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정호

문진석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안태준 • 윤후덕 • 이연희

임미애 • 한정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·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그 대 상을 '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'에 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하수도가 도로,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,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·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·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「수도법」에 따라 '국유재산(행정재산과 일반재산)'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,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.

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4조).

법률 제 호

##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의 제목 중 "무상대여·양여"를 "무상사용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국유의 일반재산"을 "국유재산"으로, "해당"을 "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해당"으로, "대여하거나 양여할"을 "대부·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국유지의 <u>무상대여・양여</u> )	제64조(국유지의 <u>무상사용 등</u> )
국가는 <u>국유의 일반재산</u> 으로서	<u>국유재산</u>
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	
요한 토지를 <u>해당</u> 지방자치단	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
체에 무상으로 <u>대여하거나 양</u>	<u>고 해당</u>
<u>여할</u> 수 있다.	<u>대부・양여 또는 사용하게</u>
	<u>할</u>